

의안 번호	1926	【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발 의 일 자 : 2022. 3. 2.(수)
- 발 의 자 : 이명녀의원외 5명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3. 24.(목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4. 5.(화)

2. 제안이유

- 독신세대, 가족해체,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)
- 지원대상, 방법, 신청 및 결정 등(안 제4조 ~ 제6조)
- 업무대행 및 지도·감독(안 제7조 ~ 제8조)

4. 근거법규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12조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, 제7조, 제14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

5. 검토의견

- 독신세대,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사망한 때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지원하고자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안임.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